



COVID-19

산업 지침:

호텔 및 숙박업소

2020년 7월 29일

covid19.ca.gov



## 개요

2020년 3월 19일, 주 공중보건 관리자 및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 책임자는 주민 사이의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대부분의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자택대기명령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 거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COVID-19의 영향은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다. 보고된 질환의 정도는 아주 가벼운 질환으로부터 (일부는 증상을 보이지 않음) 사망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환까지 이른다. 65세 이상의 심장질환, 폐 질환, 또는 당뇨 등의 심각한 기저질환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의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전염은 대개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감염자와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이루어지며, 심지어는 그 감염자가 증상을 보이지 않거나 아직 증상이 발달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근로자를 포함한 산업 집단별 또는 작업 집단별 COVID-19 개체수 또는 비율에 관한 정확한 정보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다수의 업무현장 범위 내 발생은 근로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전염될 위험에 노출됨을 나타낸다. 이런 업무현장의 예로는 병원, 장기 요양시설, 교도소, 식품 생산처, 창고, 육류가공처리공장, 그리고 식료품 매장들이 해당된다.

자택대기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근로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절차들을 밟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요 예방 실천사항으로 다음이 포함된다.

- ✓ 가능한 한 최대의 신체적 거리두기,
- ✓ 근로자 및 고객/의뢰인들의 안면가리개 (호흡기 보호가 요구되지 않는 곳)사용,
- ✓ 빈번한 손세척과 주기적 청소 및 소독,
- ✓ 본 절차들 및 다른 COVID-19 예방계획 요소들에 대한 근로자 교육.

덧붙여, 직장 내의 새로운 사례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약 식별되었을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멈추기 위한 신속한 개입 및 공중보건 책임자들과의 협업을 위한 적절한 절차들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목적

본 문서는 근로자들과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호텔 및 숙박업소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참고: 보건책임자가 사업재개를 허가한 해당 카운티의 호텔 및 숙박업소 운영자는 <u>카운티 로드맵(지침) 웹사이트</u> 에 개시된 호텔에 대한 지침서 (관광 및 개인여행)을 따를것.

이 지침은 법령, 규제령, 또는 총괄적으로 협의된 어떠한 노동권에 대한 폐지 또는 취소를 뜻하기 위함이 아니며, 자치구의 보건령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 아니며, 또한 기존의 안전 및 보건에 관련된 Cal/OSHA<sup>1</sup>의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대신하지 않는다.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과 주/지역 명령들에 대한 변경사항에 주시하라. Cal/OSHA 가 그들의 웹페이지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사항에 관한 Cal/OSHA의 지침 에 더 많은 안전 및 보건 지침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질병관리본부(CDC) 는 사업체와 직원들을 위한 지침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 안면가리개 사용 요구

6월 18일,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CDPH)는 높은 노출위험이 존재하는 모든 공공장소 및 업무현장의 개개인과 근로자들 양쪽 모두의 안면가리개의 사용을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안면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 을 공표하였다.

캘리포니아주 내의 사람들은 아래의 나열된 상황의 경우, 근로현장 또는 근로현장 이외의 곳에서 업무 시 반드시 안면가리개를 착용해야 한다.

- 모든 일반 대중과의 직접적 소통;
- 당시의 일반 대중의 존재 여부를 막론하고 그들이 방문하는 모든 곳에서의 근무;
- 다른 이들에게 판매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식품이 준비되거나 포장되는 모든 곳에서의 근무;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그리고 주차시설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근무 또는 도보 통행하는 경우;
- 신체적인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이들 (근무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들을 제외한)이 존재하는 모든 방 또는 폐쇄된 공간;
- 고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각종 대중교통, 또는 준공공교통차량, 택시, 또는 개인 자동차 서비스, 또는 합승차량의 운전이나 가동. 승객이 없는 경우, 안면가리개가 강력히 권유됨.

이러한 규칙들에 대한 모든 요구사항 및 예외들을 포함한 완전 세부사항은 <u>지침</u>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안면가리개가 다른 환경에서도 강력히 권장되며, 고용주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추가 안면가리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들은 안면가리개 착용으로부터 면제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수용정책을 개발해야만 한다. 만약 어떤 근로자가 일반적인 경우 다른사람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하도록 요구되지만 의료상의 문제로 인하여 안면가리개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고용주들은 실행 가능하고 의료 상태로 인하여 제한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아랫부분이 천으로 덧대어진 안면가리개 등의 비제한적 대체방안을 제공하여야만 한다.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업체들은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 의 안면가리개 착용에 대한 예외조건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u>지침</u> 에 해당하는 모든 이들에 한하여 해당자들이 안면가리개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체들은 고객들, 의뢰인들, 방문객들, 그리고 근로자들 내의 이러한 예외사항들을 다룰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근무지 상의 구체적 계획

- 서면 상 업무현장 고유의 COVID-19 예방책을 모든 시설에 성립시키고, 모든 업무구역과 작업과제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진단을 시행하며, 각 시설마다 예방책을 이행시키기 위하여 전담자를 세울 것.
-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 을 업무현장 고유의 예방책에 포함시키며, 예외사항을 다루기 위한 정책도 포함시킬 것.
- 근로자들 내 COVID-19 확산에 대한 정보교류를 위한 해당지역 보건부서의 연락 정보를 파악할 것.
- 예방책에 관하여 근로자들과 근로자들의 대변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과
  소통하며 예방책이 근로자 및 근로자들의 대변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할 것.
- 업무현장에서의 예방책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기록하며, 확인된 미달사항을 개선할 것.
- COVID-19 질병을 조사하고 감염 위험 상 업무관련 요소의 원인제공 여부를 판단할 것. 차후의 사례 예방을 위하여 예방책을 개선시킬 것.
- 업무현장에 확산이 발생했을 경우,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지침</u> 에 따라 필요한 절차들과 의례들을 이행할 것.
- 감염된 근로자와 밀접한 접촉 (6피트 이내에서 15분 이상)을 한 사람을 밝혀내고 COVID-19 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들) 와 밀접한 접촉을 한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절차를 밟을 것.
- 아래의 지침들을 준수할 것. 실패 시 일시적 가동정지 또는 제한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환경 내 질병 야기 가능함.



# 근무자 교육에 대한 주제

- 어떻게 <u>COVID-19</u> 확산을 방지하며,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기저질환 상태가 이 바이러스에 더욱 쉽게 감염되게 하는가에 관한 정보들.
- <u>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u> 을 사용한 체온 및/또는 증상확인을 포함한 자택 자가진단법.
- 출근 삼가의 중요성:
  - 열,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혹은 몸살, 두통, 새로운 미각 또는 후각상실, 인후통,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구토, 또는 설사 등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서술 과 같은 COVID-19의 증상들을 보이는 근로자의 경우, 또는,
  - o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고 아직 격리해제 상태가 아닌 근로자의 경우, 또는,
  - o 최근 14일 이내, COVID-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잠정적으로 전염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자(예를 들어, 아직 격리상태임)와 접촉한 근로자의 경우.
- COVID-19 확진판정 이후 근무복귀를 위해서 해당 근로자는 첫 증상 이후 10일이 경과되었고, 증상들이 개선되었고, 그 해당 근로자가 최근 72시간동안 고열을 보이지 않았어야 한다 (해열제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들을 보이지 않는 COVID-19 확진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첫 COVID-19 검사 양성판정일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에만 근무복귀를 할 수 있다.
- 끊임없는 흉부통증 또는 압박감, 혼동, 새파란 입술 또는 얼굴 등을 포함한 증상들이 심각해질 경우 의료조치를 받기 위하여. 중앙질병관리본부의 웹페이지 에서 최근사항들과 더욱 자세한 사항들을 열람할 수 있다.
- 비누를 사용하여 20초간 문지르기 (또는,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만약 근로자가 세면대 또는 손세척소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최소 60% 이상의 에탄올 (선호됨) 또는 70% 이상의 아이소프로파놀 (비감시 하의 아동들에게 해당 제품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를 포함한 비누와 물을 이용한 잦은 손씻기의 중요성.
- 근무 시 및 비근무 시의 신체적 거리두기의 중요성. (다음 신체적 거리두기 항목을 참조할 것)
- 다음 사항들을 포함한 안면가리개의 적절한 사용
  - o 안면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이는 개인용 보호

도구(PPE)가 아님.

- 안면가리개는 착용자 주변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신체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세척의 필요성을 대신하지 않음.
- 안면가리개는 반드시 코와 입을 가려야만 함.
- o 근로자들은 안면가리개 착용 전후 또는 안면가리개를 바로잡기 전후에 반드시 손세척 또는 손세정을 해야만 함.
- o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삼가할 것.
- o 안면 가리개는 공유되어서는 안되며 매 근무교대마다 세척 또는 폐기되어야만 함.
- <u>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안면가리개 지침</u>에 포함된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거나 면제하는 상황들을 지시하는 정보, 또한 안면 가리개 사용을 확실시 하기 위한 모든 정책들, 근무 규칙들, 그리고 고용주가 채택한 실천들. 또한 교육은 안면가리개 면제대상인들이 어떻게 다루어 지는지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만 함.
- 해당 시설의 모든 하청업자, 임시 또는 계약직원들 또한 COVID-19 예방정책과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휴대에 대하여 제대로 교육받도록 확실히 할 것. 임시직 및/또는 계약직원들을 보급하는 기관들과 상기된 책임들에 대하여 미리 상의할 것.
- 유급 휴가 혜택에 대한 정보는 이를 받을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재정적으로 자택체류가 용이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COVID-19로 인한 병가 및 산재 보상금 지원 정부 프로그램을 참조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에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에 따른 직원의 병가 권리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주지사의 <u>행정 명령 N-62-20에 의거, 본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u> 산재 보상혜택 및 COVID-19와 업무간 관련성에 대한 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개인 통제 방안 및 스크리닝[검사]

- 체온 및/또는 증상 검사를 모든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근무시작 시 제공하며, 해당 기관에 출입하는 모든 협력업체들, 계약직들, 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제공할 것. 체온/증상 검사자가 가능한 한 근로자들과의 밀접한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
-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것의 적절한 대체방안인 자택 자가검사를 요구할 경우, 그 검사가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자택에서 떠나기 직전에 행해진 것이고 위의 직원교육을 위한 주제들 항목에 설명된 바와 같이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을 따른 것임을 확실시 할 것.

- COVID-19 증상을 보이거나 아픈 근로자들과 고객들이 집에 머무르도록 장려할 것.
- 고용주들은 안구 보호와 장갑을 포함한 모든 요구되는 보호장비들을 필요로 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하며 근로자들이 사용하는 것을 확실시 할 것.
- 고용주들은 잦은 손세척 또는 손세정제 사용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만한 일회용 장갑 사용을 고려해야 함; 예시로는 다른 이들의 증상을 검사하거나 공동으로 만져지는 항목들을 다루는 근로자들을 위함.
- 객실청소는 반드시 고객들이 없을 때에만 제공할 것. 객실청소부들은 고객의 개인 소지품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시되어야 할 것. 객실청소부들은 환기시설의 작동 및/또는 창문 개방을 해놓도록 지시되어야만 함.
-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이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세척, 그리고/또는 적절한 손세정제 사용을 고객들, 청소하는 객실, 그리고 우편 또는 다른 공동적으로 만져지는 항목들과의 접촉 이후에 하도록 장려할 것. 대리주차 직원들, 수하물 취급인들, 그리고 객실청소부들은 반드시 근무 중 잦은 손세척 또는 적절한 손세정을 해야 함.
- 고객들과 방문객들은 방문 즉시 체온 및/또는 검사되어야 하며 손세정제 사용과 안면가리개 착용을 요구되어야 함. 안면가리개 없이 도착한 고객들은 반드시 안면가리개가 사용가능한 경우 제공되어야 함. 건물 내외에 적절한 안면가리개 사용과 통용되는 신체적 거리두기 실천을 설명하는 적당한 안내판을 눈에 띄게 개시하여야 함.
- 고객들에게 안면가리개 지참을 미리 상기시키며, 가능하다면 안면가리개가 없이 도착한 사람 누구에게든 안면가리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



#### 세척 및 소독 규정

- 호텔 로비, 프론트, 입실수속대, 벨 데스크, 휴식실과 점심식사실, 탈의소, 선적부두, 주방과 층계, 계단통, 난간(핸드레일) 및 엘리베이터 제어를 포함한 출입장소 등의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청소를 철저히 실시할 것.
- 문 손잡이들, 객실 내부 잠금장치들, 자판기와 제빙기, 전등 스위치, TV 리모콘들, 전화기들, 헤어드라이어들, 세탁 및 건조기 문들과 조작부들, 수하물 수레, 셔틀 문 손잡이들, 변기들, 그리고 손세척 시설 등을 포함한 밤낮에 걸쳐 공동으로 사용되는 표면들을 소독할 것. 매일 방 청소 중 표면들을 소독할 것. 소독 이전에 더러운 물건들을 세척할 것.
- 근로자들에게 그들의 업무시간 중 청소 실행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것. 청소 과제는 업무시간 중 근로자의 책무들 중의 일부로 배정되어야 함.
- 작업실, 책상, 그리고 지원 카운터에 손세정제, 세정용 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세정용품을 배치하고, 고객들을 직접 지원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개인용

손세정제를 제공할 것.

- 위생시설들이 가동상태에 있으며 물품이 항시 비축되어 있음을 확실시 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비누, 페이퍼타올, 그리고 손세정제가 제공되도록 할 것.
- 소독용 화학물질 선택 시, 고용주들은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환경 보호국 (EPA) 허가 목록에 있는 COVID-19과 반대로 사용 허가된 제품들을 사용하고 제품의 사용설명을 따르도록 할 것. 최근에 만들어진 바이러스성 병균들에 맞서 효율적인 것으로 분류된 소독제,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 (1갤런[약3.79 미터]의 물에 5 테이블스푼[약74 미리리터] 비율), 또는 표면에 적합한 최저 70% 이상의 알코올 용액을 사용할 것. 화학물질의 위험성, 제조업체의 사용설명, 환기 지시사항, 그리고 Cal/OSHA의 안전한 사용 지시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제공할 것. 세정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들은 제품 사용설명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장갑 및 기타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에 따라 요구되는 천식-더욱 안전한 청소방법들 을 따르며 적절한 환기를 확실시 할 것.
- 가능한 한, 바닥청소 시 쓸거나 병균을 공기 중으로 퍼트릴 수 있는 기타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 것. 가능한 한, 고성능 미립자제거 [HEPA] 필터를 사용한 진공청소기를사용할 것.
- <u>재향군인병</u> 과 물과 관련된 다른 질병들의 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장기간 시설 폐쇄 이후에 모든 수도설비와 장치들(예, 식수대, 장식용 분수대)의 사용 안전 여부를 확실시 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
- 전화기, 타블렛, 노트북, 책상, 펜, 기타 작업자재, 또는 근무처 등 어느 곳이든 공유를 피할 것. 절대 개인 보호장비 (PPE)를 공유하지 말 것. 모든 공유되는 도구들과 장비들은 근무교대 전, 중, 후, 또는 언제든 해당 장비가 새로운 직원에게 전달될 시에 반드시 세정되어야 함. 이에는 전화기, 라디오, 컴퓨터와 기타 통신 장치, 지불 단말기, 주방 도구, 공학 기기, 안전 버튼, 관리대장, 객실청소 수레와 청소기구, 열쇠, 시간기록계, 그리고 모든 기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도구들이 포함됨.
- 작업장 내 식료품 저장실에서 공유되는 음식과 음료 도구 (공용되는 커피머신을 포함)의 사용을 중단할 것. 수동식 작동 제빙기를 폐쇄하거나 손을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사용할 것.
- 이동식 고효율 공기청정기의 설치, 건물의 공기 여과장치를 가능한 한 최대 효율로 개선, 그리고 작업장, 객실, 그리고 다른 공간들의 외부공기와 환기 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타 변경사항의 적용을 고려할 것.



### 호텔 운영 상 추가 세척 및 소독 규정(프로토콜)

- 잡지, 메뉴, 지역 명소 세부사항, 쿠폰, 기타 등등의 모든 재사용 가능한 부수물들은 객실에서 제거되어야 함. 중요한 정보들은 일회용 부수물 및/또는 전자적으로 게시되어야만 함.
- 오염된 리넨 제품은 일회용 밀폐봉지에 담긴 채 객실에서 이동되어 제거되어야함. 각 손님의 숙박으로 인한 모든 타월과 리넨 제품의 제거나 세척은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행해져야 한다. 이런 항목들은 이동 시 불필요한 접촉을 배제하기 위하여 객실 내에서 봉지에 담아져야함. 모든 침대용 리넨 제품들과 세탁물들은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에따라 고온에서 세척 및 청소되어야함.
- 실현가능하다면, 객실을 청소 전 또는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동안 비우도록 고려할 것.
- COVID-19의 추정적 사례의 경우, 해당 객실은 서비스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격리되어야 함. 해당 객실은 사례가 확정 또는 완료될 때까지 서비스를 재개하지 말아야 함. 양성판정된 사례의 경우, 객실은 중앙질병관리본부 지침 에 따른 강화된 소독절차를 거친 후에만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음.
- 손님 및 근로자용 주 출입구와 자동차 진입로, 접대장소, 호텔 로비, 식당 출입구, 만남 및 대회장, 엘리베이터 대기장, 수영장, 살롱, 그리고 운동용 공간 등의 접촉장소에 손세정제 분배기를, 가능하면 비접촉식으로 설치할 것.



#### 신체적 거리두기 지침

- 최소 6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근로자들, 손님들, 그리고 대중들 사이에서 행하는 것을 확실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것. 실물의 칸막이 또는 시각적 안내표지 (예, 근로자 그리고/또는 손님이 어디에 서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바닥 표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어느 곳이든 근로자들 또는 손님들이 대기행렬을 이뤄야 하는 곳에는 적정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위한 표시가 확연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이에는 입실/퇴실대, 엘리베이터 대기장, 커피샵과 다이닝룸[식당], 그리고 택시 및 합승을 위한 줄이 포함된다.
- 신체적 거리두기 규정은 근로자 휴식공간, 유니폼 조율공간, 교육실, 공유되는 작업공간, 근로자 서비스 창구 (금전출납 창구 형식의 창문을 통한), 그리고 기타 고밀도의 장소들에서 근로자들의 적절한 거리두기를 확실시 하기 위하여 행해져야 함.
- 근무교대전 회의는 화상으로 또는 적절한 신체적 거리두기가 직원들 사이에서 가능한 공간에서 행해져야 한다. 규모가 큰 부서들은 뒷채의 복도와 서비스 엘리베이터의 교통량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출근에 시차를 두어야 함.
- 신체적 거리두기 규정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과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자의 휴식에 시차를 두어야 함.
- 업무변경 신청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고객 및 기타 근로자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사항을 제공하도록 고려할 것. (예, 안내데스크에서의 업무 대신 재고 관리직, 또는 행정적 필요사항을 전화상 재택근무를 통하여 관리하는 업무)
- 휴식 중 근로자들 격리시키고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칸막이를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의 거리를 넓힐 것. 가능하면, 그늘막과 신체적 거리두기를 확실시 하는 좌석을 구비한 옥외 휴식공간을 만들 것.
- 업무공간과 손님 거처에 적어도 6피트 이상의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확실시 하기 위하여 업무공간, 큐비클[좁은 방], 로비, 프론트 데스크 입실처, 업무본부, 안내 서비스 장소, 그리고 기타 공간들을 가능할 경우 재디자인 할 것.
- 화장실, 복도 등 높은 교통량이 있는 구역에 근로자들이 모이는 것을 막아야하며, 가능한 경우 서로 옆을 지나쳐 걷는 것을 없애기 위해 복도와 통로에 걸음 방향을 설정할 것.
-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수를 제한할 것. 이런 요구사항을 알리는 표시를 사용할 것.
- 근로자들이 신체적 거리두기를 어기는 악수 또는 비슷한 인사방법을 피하도록 요구할 것.
- 실제 업무처로 물품을 배달하기 위한 사람 대 사람의 접촉을 없앨 것. 타인의 펜이나 클립보드를 만지는 것을 피할 것.



#### 호텔 운영에 대한 추가 신체 거리두기 지침

- 고객들은 가능하면 지주대로 받혀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출입하거나 자동으로 또는 자주 손세척 및/또는 적절한 손세정제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통해 가동되는 문을 통하여 출입하여야 함.
- 개개인 사이에 적어도 6피트의 신체적 거리두기를 위해 로비의 손님맞이 직원과 손님의 대기열을 건물 밖에서 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기열이 최대치에 이르는 시간동안에 행해질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할 것.
- 근로자들은 차량 또는 택시의 문을 열지 말 것.
- 가능할 시, 객실 서비스, 세탁과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그리고 생활 편의품 배달이 접촉이 없는 픽업과 배달 절차를 통해 가능하도록 할 것.
- 호텔 운영과 식당에 있어 음식과 음료수 제공을 식당내 식사가 수정된 또는 완전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재개될 때까지 가져가는[테이크 아웃] 형태와 "접촉이 없는" 룸서비스 방식으로 제한할 것.
- 호텔과 수영장은 신체적 거리두기 요구사항이 집행될 수 있음을 확실시할 것이며, 이는 수영장에서 경계선[레인]당 한 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음.
- 호텔과 골프 코스는 직계가족 그리고 동거인들을 제외하고 카트당 한명의 참가자 만을 허용해야 하며, 티 타임의 간격을 늘리고, 골프 코스재개가 허가된 때에만 개방할 수 있다.



## 완전 운영 재개 시 호텔에 대한 고려사항

- 호텔 운영과 식당내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주점, 운동센터, 스파, 살롱, 큰 회관, 연회장, 또는 대회장은 수정된 또는 완전한 형태의 운영재개가 허가될 때까지 폐쇄를 유지해야 한다.
- 한정된 또는 완전한 형태의 운영이 허가되었을 때, 식당내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과 주점을 운영하는 호텔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 좌석 수를 줄이거나 좌석을 재배치하여 개인 또는 손님의 그룹/일행사이에 적어도 6피트의 간격을 가능케 하여야 한다.
  - o 음식 준비와 식당 운영을 위한 추가적 그리고 고유화된 청소와 위생처리 절차를 도입하여야 한다.
  - 식당과 주점 산업을 위한 지침이 <u>COVID-19 회복 로드맵 웹사이트</u>
    에서 열람 가능 시 이를 참조할 것.
- 한정된 또는 완전한 형태의 운영 재개가 허가되었을 때 운동센터, 스파,

응접실을 포함한 호텔은 관련 지침이 <u>COVID-19 회복 로드맵 웹사이트</u>에서 열람 가능 시 이를 참조할 것.

- 대형 모임이 주/지역 명령에 따라 허가될 경우, 회의, 대회의, 연회, 또는 기타 이벤트 숙박시설을 갖춘 호텔은 다음을 반드시 준수할 것.
  - o 실내 배치를 손님들 사이의 신체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
  - o 참가자 사이의 신체적 거리두기가 적어도 6피트가 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대회의실 또는 회의실의 수용 가능 인원수를 줄일 것.
  - o 셀프서비스 부페 형식의 음식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서비스 형식으로 대체할 것.
  - o 회의 및 대회의장에 대한 추가 지침을 위해, <u>COVID-19 회복 로드맵</u> 웹사이트에 지침 열람이 가능 시 이를 참조할 것.

1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u>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u> 및 <u>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u>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